

대구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나308304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은규

피고, 피항소인 대구광역시 남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경우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11. 11.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3. 19. 선고 2020가단11698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남구 B 외 2필지 지상에 C요양병원 D동 14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면서 하수도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2,150인용 부패탱크식 정화조를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2. 원고에게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242,617,9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8. 1. 2.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은 하수처리구역 안 합류식하수관로 지역에 있고, 공공하수도에 유입되는 모든 하수(오수를 포함)는 차집관로를 통하여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대구 전체가 하수처리구역이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요구로 이 사건 건물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인 부패탱크식 정화조를 설치하였는데, 피고는 또 다시 원고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중부과와 다름이 없어 위법하고, 하수처리구역 내에 분류식하수관로 지역에서 정화조 설치가 면제되어 하수도원인자부담금만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여 불평등하다.

다. 이 사건 처분에는 위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납입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그 일부 청구로서 4,000만 원을 청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아래에 실시하는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다. 이중부와 여부에 대한 판단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의무의 발생

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부패탱크용 정화조를 설치한 것은 이 사건 처분 당시의 하수도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것인데, 이에 의하면, 오수를 발생시키는 건물을 설치하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였다. 하수도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오수』는 사람의 생활,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생긴 액체성 또는 고체성 물질, 즉 분뇨를 포함하여 오염된 물을 의미한다(이에 반하여 『하수』는 오수와 지하수·빗물을 포함한 개념이다).

이 사건 건물은 하수처리구역 안에 합류식하수관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17층 규모의 대규모 환자들을 유치할 용도로 증축된 병원 건물로서 오수를 발생시키는 건물이므로, 원고는 하수도법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나) 하수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정화조에는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는 금지되는데, 이와 같이 정화조는 오수만을 저장하여 인체에서 배설된 분뇨를 침전시키는 시설에 불과할 뿐이고, 오수를 처리하여 하수도관으로 보내는 시설이 아니다.

다) 다만, 하수도법 제34조 제1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네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살핀다.

(1)하수도법 제34조 제1항은 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1호), ②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2호), ③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에서 합류식 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키는 경우(3호), ④ 기타 환경부령이 지정하는 경우(4호)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하고 있다.

(2)우선, 1호의 면제사유에 관하여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2호의 면제 사유에 관하여는, 하수도법 제2조 제8호의 정의에 의하면, 『분류식하수관로』는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의미하는데, 원고가 분류식하수관로를 설치하여 오수와 하수를 구분하여 하수관로를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은 합류식하수관로 설치 구역에 있음은 이미 본 바와 같다.

(4)3호의 면제사유에 관하여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현재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5)4호의 면제사유에 관하여는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건물은 오수를 발생시키므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고, 그 설치를 면제할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의 발생

가) 하수도법 제61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증축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하루에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정화조는 오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분뇨를 침전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고, 어느 정도 침전된 오수를 공공하수도관에 내보내게 되므로, 공공하수도에 유입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게 된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하루 10㎥ 이상의 오수가 발생되어 공공하수도관으로 배출됨을 이유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라. 평등 원칙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원고는 분류식하수관로가 지나가는 구역의 건축주는 정화조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데, 하수처리구역에서는 정화조를 설치하면서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평등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하수도법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분류식하수관로는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의미하므로, 오수만을 처리하기 위한 하수관로가 따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경우와는 비교의 대상이 달라서 평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게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들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명백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석원, 판사 진세리, 판사 김낙형

별지

관계 법령

■ 하수도법 (2018. 10. 16. 법률 제15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 7., 2010. 6. 8., 2011. 11. 14., 2013. 7. 16.>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합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8. "분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 9의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강우(降雨)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하수저류시설"이란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1.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배수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15.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2013. 7. 16.>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7. 16.>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14.>

■ 하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83호로 개정되어 2018. 1. 18.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 6. 26., 2014. 7. 16.>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16.>

■ 하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23호로 개정되어 2018. 1. 18. 시행되기 전의 것).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